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4.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7. 15. 정일영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 7. 16.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4. 8. 26.)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 11. 26.)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 12. 8.)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 3. 12.)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 3. 17.)

상정 · 축조심사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 3. 23.)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수정가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6. 3. 24.)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축조심사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정일영의원)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은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교육기관 내 평생교육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임.

그러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이 장려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외국교육기관 역시 국내 학교와 동일하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교육기관도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수요층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외국교육기관의 우수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천우정)

개정안과 같이 외국교육기관에서도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외국교육기관의 우수한 인프라를 국내에 적극 활용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으로서,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가 보다 넓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산업교육기관”의 범위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이를 준용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승인된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하여 외국교육기관에서도 산학협력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

4. 대체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고민정)

정일영 의원, 김문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고, 각각의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